

본 브로셔는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CCF)의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Hard to Place 상황과 Hard to

QA Serve 상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Hard to Place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지만 그 가족과 담당 기관이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소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Hard to Serve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여러 지원자의 적절한 서비스의 도움으로 자택에 머물 수 있지만 그 가족과 지역 기관이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A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 개인이 가장 적절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또는 거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또는 거주지 알선 시 지연 최소화.
- 시기 적절한 서비스 제공 또는 거주지 알선을 방해하는 장애물 해결.

QA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는 언제 개입합니까?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 옵션과 분쟁 해결 절차를 이미 소진한 후에, 또는 부모/친인척이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존 시스템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QA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에 개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에 포함한 누구든 Hard to Place/Hard to Serve 유닛에 해결 방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자체 의뢰)
- 부모 또는 친인척
- 가정 법원 판사
- 학구
- 지역 사회복지부
- 주 담당 기관 및 지방 사무소
- 자원 봉사(비영리) 단체
- 후원자

QA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에 의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뢰자는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CCF 정보 수집 및 CCF 정보 공개 양식. 이 양식은 www.ccf.n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사항도 제공하십시오.

- 의료 기록
- 심리적 평가
- 정신적 평가 및 기능적 평가
- 심리 사회적 병력
-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
- 법정 소송(있는 경우)
- 거주지 지원 이력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
관리됩니다.



www.ccf.ny.gov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에 의뢰하려면 CCF 정보 공개 양식, CCF 정보 수집 양식, 관련 자료를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Hard to Place/Hard to Serve Unit
NYS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52 Washington Street
West Building, Suite 99
Rensselaer, New York 12144

팩스: 518-473-2570

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래로 전화 주십시오.

Sheila Jackson,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
조정관

전화번호: (518) 402-3284

Sheila.Jackson@ccf.ny.gov

-또는-

Kathleen Rivers,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
부조정관

전화번호: (518) 473-9032

Kathleen.Rivers@ccf.ny.gov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Hard to Place/Hard to Serve 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Children and Adolescent Service System Program, CASSP)의 핵심 원칙에 따라 활동합니다. 아동 중심(Child-centered), 가족 중심(Family-focused), 지역 사회 기반(Community-based), 복합 시스템(Multi-system), 문화적 적절성(Culturally competent),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 최소한의 침범(Least Intrusive).

일반 정보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는 행정부(Executive Department) 내부에 설립되어 시스템을 망라하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이 심의회는 일차 목표 중 하나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다양한 시스템의 서비스가 주는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의회는 이 목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개인 아동, 청소년,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
- 2) 주 정책에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



www.ccf.ny.gov

Hard to Place/ Hard to Serve 부 서의 역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시스템을 망라하여 평가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www.ccf.ny.gov

Renée L. Rider
행정 책임자



Kathy Hochul
주지사